

상대국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로 승부해야

수출여건 날로 어려워져, 자체 품질관리 철저히 하고
속박이 수출 지양·계약사항 준수 등으로 신뢰 쌓아야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욕구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 최근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불량식품으로부터 자국민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새로이 정비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식품은 소비자로부터 차단하도록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Farm to Table)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대통령이 직접 지시함으로써 앞으로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기준 및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95년부터 WTO체제가 출범됨에 따라 각국의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지만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내 농산물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농산물은 수출이 불가능함은 물론, 국가간의 통상문제가 발생될 경우 특히, 안전성과 관련이 있는 문제는 인간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거론조차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농산물의 수출 증대는 국내 농산물의 가격 지지는 물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외화를 획득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확보되고 이와 병행하여 품질 고급화가 이루어진 농산물이 수출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업

인들이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출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올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수출농가나 업체가 계약재배하고 있는 작목반 단위의 농가를 대상으로 수확·수출시기 등을 감안하여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등 품목별로 적정 안배하여 약 1천여건을 분석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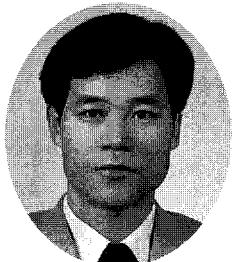
조사대상 농산물은 사과, 배, 감귤, 복숭아 등 과실류가 9품목이며 오이, 방울토마토, 양파, 가지, 파프리카, 팽이버섯 등 채소류 및 기타 15개 품목 등 모두 24개 품목이다. 그러나 필요시는 대상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시료채취, 안전성우려 농가·포장 위주

시료채취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조, 대상자와 포장여건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안전성이 가장 우려되는 농가 또는 포장을 위주로 하며 가급적 시·도 및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와 협동으로 할 계획이다. 채취된 시료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출장소장이 신속히 권역별로 분석기관에 안전성 분석을 의뢰한다.

생산자 또는 수출업체가 직접 수출대상 농산물의 시료를 채취하여 안전성분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업무형편을 감안, 수출에 적극

반영토록 지원할 계획이며 분석비용은 1점 1약제당 3만8천원이다. 분석결과는 분석기관이 정밀분석을 실시한 후 출장소장에게 신속히 통보하고(신청분석의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직접 통보) 농관원 지원·출장소장은 수출전에 시·도 및 시·군, 수출업체, 농가에 분석결과를 알려주어 수출에 반영되도록 한다.



유평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잔류허용기준, 국가별로 다를수 있어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에 적합한 농약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수출상대국의 잔류허용기준 및 농산물에 잔류하는 요인을 감안, 살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농약잔류허용기준(MRLs, Maximum Residue Limits)은 사람이 매일 같이 식품에 잔류된 농약을 섭취하여도 전혀 위해하지 않은 수준인 1일섭취허용량(ADI) 등을 토대로 국민 평균체중과 국민 개개인이 하루에 먹는 식품의 양을 감안, 국가별로 설정하므로로 국가별 잔류허용기준이 각기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잔류허용기준은 식의약청장이 설정

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현재 2백41 종이 설정되어 있다.

농산물 중 농약

권역별 분석기관 현황

구분	시험연구소 (영등포)	경기지원 (안양)	강원지원 (춘천)	충남지원 (대전)	전남지원 (광주)	전북지원 (전주)	경북지원 (대구)	경남지원 (부산)
관할 지역	전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제주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잔류량에 영향을 주

는 주요인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농약의 제형 및 살포방법 △농약의 살포농도 및 살포량△작물체 표면의 형태 △작물체의 종 량에 대한 표면적 △작물의 성장속도 등을 들 수 있다.

수출농산물의 농약사용, 방제력 작성후 해야

농약은 농산물별로 적용병해충에 적합한 농약을 선택하여 사용농도는 물론 사용횟수, 최종 살포일수 등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살포해야 한다. 과실류에 사용하는 농약을 채소류에 살포하게 되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높다. 농약은 농도가 높고 살포량이 많다고 해서 방제 효과가 좋은 것이 결코 아니다. 또한 적용병해충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 번갈아 가면서 방제적기에 사용하여 병해충이 농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출농산물의 농약사용은 수출대상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사전에 파악,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을 선정하고 방제력을 작성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급격한 잔류허용기준이 높고 분해가 빠른 농약을 선택하되, 외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농약은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농약을 살포할 때에는 농관원(지원·출장소)이나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의 사전지도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수출농산물의 품질관리, 신뢰가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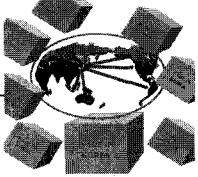
안전성을 제외한 농산물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은 신선도, 품목 고유의 색택·맛, 크기, 고르기, 당도 등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농산물의 품질을 구분하는 등급 규격을 제정하여 특품, 상품, 보통으로 등급을 차별화하고 있으며 가격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해당국가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선택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아 수출농산물은 해당 국가의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품질을 갖춘 것이 좋은 상품이 된다.

특히, 일본과 미국에 수출하는 농산물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업체나 농가는 수출계약을 했다가도 국내가격이 수출가격보다도 높게 되면 수출계약을 임의적으로 파기하는가 하면 국내가격보다 수출가격이 높게 되면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생산한 농산물(수출단지 미지정 농산물)을 수출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농산물이 수출되는 등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수출농산물의 품질이 결과 속이 다른 속박이 등 품질이 균일하지 않아 상대국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국가간 통상거래에 있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선택기준에 따라 품질이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상대국의 품질기준을 사전에 파악한 후 파종~수확까지 비배관리는 물론 아울러 상대국이 원하는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자체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수출을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사항은 반드시 준수하는 신뢰구축과 선적전에 안전



성을 확인하여 수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성 확보 위해 적극 노력해야

WTO체제하에서 각 국의 농산물 시장이 점차 개방되어 감에 따라 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안전성을 중시하여 수입농산물과 자국내 농산물에 대하여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병행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채소류로 말미암아 일본 국내의 채소류 가격이 하락하는 등 농업인의 불만이 높아지자 일본정부에서는 Safe-Guard를 발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민단체에서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 즉, 우리나라의 신

토불이(身土不二)에 해당하는 명분을 내세워 수입농산물을 간접적으로 배척하는 등 우리 농산물의 수출여건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저장 및 출하단계에서 실시하는 안전성조사와 병행하여 수출농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당 수출업체, 농가가 원하는 대로 안전성분석을 적극 지원하고 신청분석 비용의 경감을 위해 서도 수출농산물을 당원의 안전성 조사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다. 수출농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출업체와 농가의 노력이 중요하다. 우리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농약정보**

미·일 수입농산물 안전성검사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건후생부 산하의 FDA에서 통관전에 안전성검사를 실시. △EPA에서 작물별, 농약별로 설정한 4백29종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초파여부를 검사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거나,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면 불법식품으로 간주. △특히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성분이 검출되면 『영(零)』의 허용기준 : Zero Tolerance』을 적용. △FDA 규제검색 계획에 따라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Zero Tolerance가 적용되어 불량식품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하여는 통관거부 조치와 함께 향후 계속적으로 검색을 강화함은 물론 그후에도 같은 조건에서 생산되었다고 가정하여 자동 억류(Automatic Retention) 조치를 취하기도 함.



△후생노동성검역소가 세관 통관전에 안전성검사를 실시. △모니터링 대상업체로 지정 받은 업체가 수출하는 경우에는 선 통관후 시중 유통품에 대한 샘플링 검사를 실시. △세관 통관전에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농약 등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부적합농산물로 간주. 통관이 거부되고 모니터링 지정업체의 농산물이 부적합된 경우에는 모니터링 지정업체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당해 국가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 강구. △유해물질 중 농약은 1백99종 성분에 대해 농산물별로 설정되어 있어 안전성검사 결과 잔류농약은 이 기준을 초과하면 안됨. △농산물별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은 대부분 부적합 여부를 평가하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 Codex 기준 또는 다른 나라의 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하거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허용기준치를 정하여 평가.